

## ◎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-152호

「선원법」 제44조(선원명부의 공인) 제3항에 따른 승하선 공인을 받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「같은 법」 제179조(과태료) 제3항제6호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9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### 선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

#### 1.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

성명	생년월일	선명	주소
고*성	79.10.12.	제66선*호	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162번길

#### 2. 과태료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- 과태료 부과 의 원인이 되는 사실 : 선원명부 미공인(기관장 김\*수의 승선 미공인)
- 근거법령 : 「선원법」 제179조(과태료) 제3항제6호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5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#### 3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납부기한

-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: 과태료 60만원
- 납부기한 : 2024.12.31.(화)

#### 4. 안내사항

- 과태료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서 발급받아 납부 바랍니다.
-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습니다.
-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(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)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%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,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60개월간 징수하며,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(압류-매각-청산)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.
- 문의사항 :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(제주시 임항로 128 / 064-720-2638)